

보도 시점 2026. 1. 19.(월) 10:00 배포 2026. 1. 19.(월) 08:00

2월10일(화)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세요.

- 유튜버,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 대상 신고안내 서비스 확대 실시

□ 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26.2.10.(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167만 명)*에게 '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고(1.21. 부터),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 할 예정이니 업종별 유의사항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매업, 주택 임대 및 매매업, 캐디 등 인적용역사업자, 연예인 등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의 일환으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신고안내 최초 실시와 함께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전년도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 유튜버와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 15만 명에게 안내서비스(2025년은 8만 5천명)

○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걱정 없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 : 지급명세서, 외화 수취내역 등 신고대상 수입금액 자료를 자동 제공

①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버) 등에 대해 신고안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이번 '25년 귀속 신고부터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수취 내역이 있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게도 신고안내를 최초 실시하고, 용역제공 금액이 연간 일정규모(2천 4백만 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쿼서비스 배달원 등의 인적용역사업자에게도 신고안내를 추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 신고안내 방식은 **모바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잘못된 번호, 미가입자, 결번 등으로 인한 **발송 실패로** 확인되거나, **열람을 하지 못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서면으로 재차 안내**합니다. 참고 2

○ 모바일 안내문으로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스미싱) 문자이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이 보내드리는 모바일 안내문에는 국세청 로고 및 위변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되어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화)까지

□ 이 외에도 병·의원과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 임대업자, 캐디 등의 인적용역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화)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

① (신고 대상)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 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회원,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브, 트위치, 인스타그램, 틱톡 등) 와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② (신고 제외)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복권·우유·연탄·우표·인지 등 소매업 종사 면세사업자, 보험 모집수당을 받는 자, 음료품 배달원 및 방문판매원 등

○ 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의료업, 학원업 등을 운영하는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 신축판매업자, 대부업자, 연예인 등

3 신고서 작성 전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꼭 확인해 보세요

-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시 사업자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고자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참고 3

접근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경로 (손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신고 시 업종별 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 검증 결과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 분석자료*를 제공합니다.

* 현금 수입금액 신고비율 저조, 주택 임대 수입금액 과소신고, 의료 비보험 매출비율 저조 등

- 특히, 신고경험이 부족한 캐디, 대리운전기사, 쿼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 사업자와 올해 처음 신고를 안내하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게 수입금액을 자동 작성할 수 있는 편의(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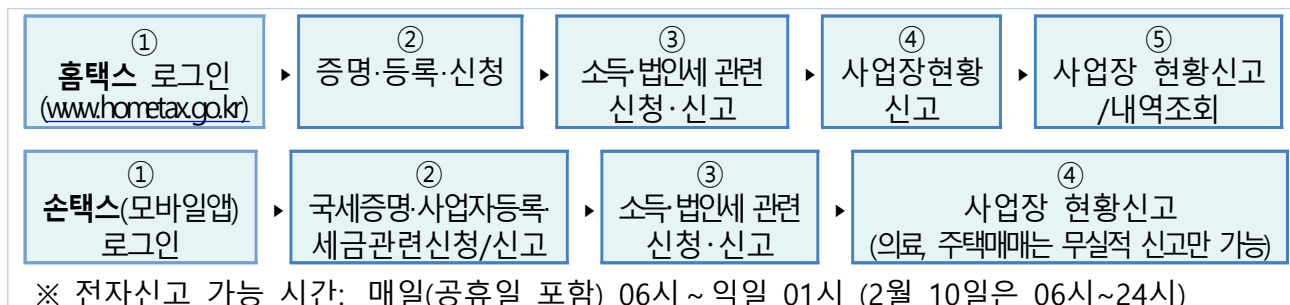
-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 신고를 누락하기 쉬운 사업자의 경우 신고내용 분석을 통해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니, 과세기준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수입금액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 5

4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한 홈(손)택스와 ARS로 신고하세요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및 ARS(☎1544-9944)를 이용하시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사업장 현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며,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장 현황신고·종합소득세 신고현황도 안내합니다.

홈(손)택스 신고 접속경로



- 또한,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

ARS 무실적 신고 방법

- ① 1544-9944 → 2번 → 1번 , ② 사업자번호 + # , ③ 무실적 신고 적정여부 질문* , ④ 주민번호 + # , ⑤ ARS 무실적 신고서 제출

* 매출·매입 유무를 질문하고, 있는 경우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

- 참고로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숏폼(8종)을 확인할 수 있으니 신고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등

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편해집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꼭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가산세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 0.5%
▶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직전매출 4천8백만 이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사실과 다르게 기재	공급가액 × 0.5%

-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밤낮으로 뛰고 계시는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더 많은 도움자료를 발굴·제공하는 등 납세신고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총괄>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책임자	과 장 손채령 (044-204-3241)
		담당자	사무관 민훈기 (044-204-3257)
<협조>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용선 (044-204-2551)
		담당자	사무관 문숙자 (044-204-2572)
<협조>	복지세정관리단 소득자료관리과	책임자	과 장 정해동 (044-204-3841)
		담당자	서기관 최명일 (044-204-3862)

참 고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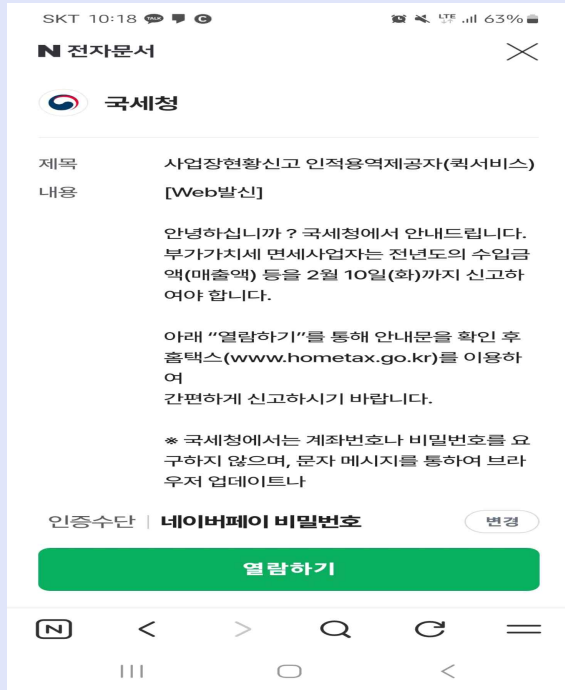
1. 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법	6
2.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서면)	8
3. 신고도움서비스 접근경로 및 자료 제공현황 등	10
4.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13
5.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및 참고사항	15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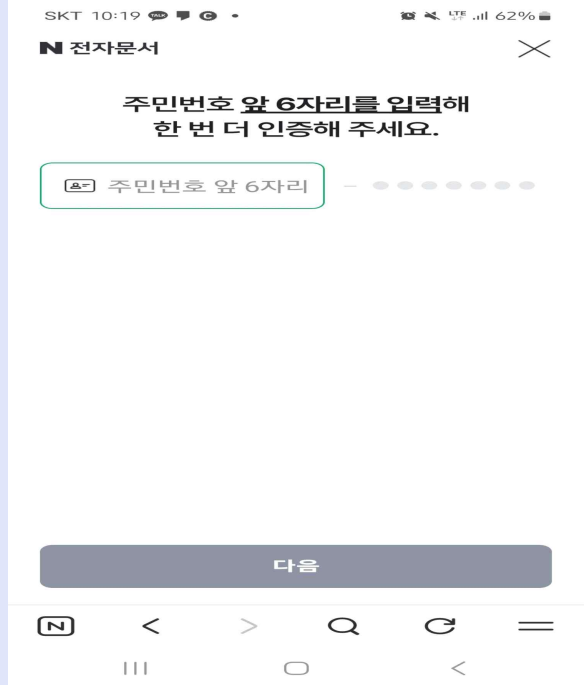
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법

▶ 네이버 (전자문서)

① 네이버(전자문서) 수신



② 본인 인증하기



③ 모바일 안내문 열람

2025년 귀속
(비)유형 (간편장부)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앱(손택스)을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2025년 귀속)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1월 1일부터 2월 10일(화)까지 신고["사업장 현황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시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 받아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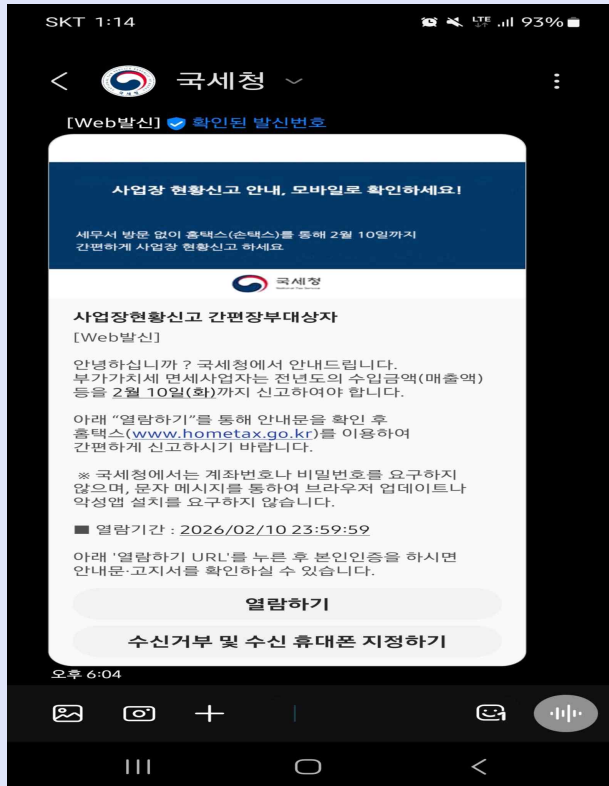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기본정보 입력	수입금액 입력 (수입금액 검토표)	신고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로그인 → 증명 등록 신청 → 소득 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 → 사업장 현황 신고	자동입력됨 * 무실적사업자는 "무실적 신고" 클릭 *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첨부 서류 제출방식 선택	① 간편 조회 가능 -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조회* ②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후 수입금액 내역 작성 * 학원업, 대부업 등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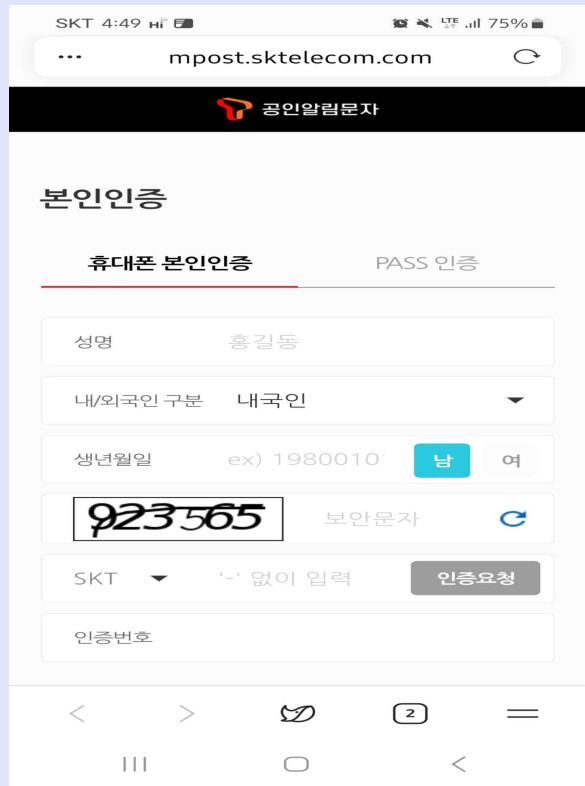
1) 로그인 방법 :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통신사 인증 가능), 아이디, 생체인증
2) 화면에서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조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조회" 클릭하면 2025년 신용카드 등의 매출자료 조회 가능

▶ 문자메세지

① 안내문 도착 문자 수신



② 본인 인증요청 및 인증하기



③ 모바일 안내문 열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비) 유형 (간편정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앱(손택스)을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2025년 귀속)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1월 1일부터 **2월 10일(화)**까지 신고[**사업장 현황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시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 받아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기본정보 입력	수입금액 입력 (수입금액 검토표)	신고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로그인 → 증명·등록 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 현황 신고	자동입력됨 * 무실적사업자는 「무실적 신고」 클릭 * (세금)계산사가 있는 경우 첨부 서류 제출방식 선택	수입금액 검토표 ① 간편 조회 가능 -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조회* ②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후 수입금액 내역 작성 * 학원업, 대부업 등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1) 로그인 방법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통신사 인증 가능), 아이디, 생체인증
 2) 화면에서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조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조회」 클릭하면 2025년 신용카드 등의 매출자료 조회 가능

<앞면>

- 신고기간 : 2026.2.10.까지
-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전자신고문의 : ☎126번 > 1번 > 3번 > 2번
- 세법문의 : ☎126번 > 2번 > 4번
- * 타인은 개봉하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앱(손택스)을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 유형
(복식부기의무자)

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2025년 귀속)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1월 1일부터 2월 10일(화)까지 신고【'사업장 현황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신 수입금액은 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검증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신고방법과 주요 서식 작성요령/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방법 안내 및 유의사항

- (신고방법 안내)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손택스)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도움자료) 신고분석 등 신고도움자료¹⁾를 홈택스²⁾ 또는 모바일앱(손택스)³⁾에서 확인하여 신고하세요.

- 1) 사업장 현황신고·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포함
- 2) 홈택스 >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도움 서비스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 작성 화면 상단의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 3) 모바일앱(손택스) >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영위 사업자가 신고기한(2월10일)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

-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10.)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 부담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0)

-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가산세 제외

업종별 제출 서류

업 종	제출 서류
모든 업종 (공동 제출 서류)	1. 사업장 현황신고서 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출계산서가 있는 경우만 작성) 3.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계산서가 있는 경우만 작성)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만 작성)
일반병의원	수입금액 검토표(병의원·한의원 공통)
피부과	수입금액 검토표(병의원·한의원 공통) 수입금액 검토부표(피부과 병·의원용)
안과	수입금액 검토표(병의원·한의원 공통) 수입금액 검토부표(안과 병·의원용)
성형외과	수입금액 검토표(병의원·한의원 공통) 수입금액 검토부표(성형외과 병·의원용)
치과	수입금액 검토표(병의원·한의원 공통) 수입금액 검토부표(치과 병·의원용)
한방과	수입금액 검토표(병의원·한의원 공통) 수입금액 검토부표(한방 병·의원용)
동물병원	수입금액 검토표(동물병원용)
대부업	수입금액 검토표(대부업자용)
일반학원	수입금액 검토표(학원사업자용)
연예인	수입금액 검토표(연예인용)

기타 안내사항

- (ARS 무실적 신고) 홈택스·손택스 뿐 아니라 ARS*(☎1544-9944)를 통해서도 무실적 신고 가능

* 전화 1544-9944 → 2번(사업장 현황신고 무실적 신고) → 1번(무실적 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 ARS 무신고 적정 여부 질문 청취 → 0번(무실적 신고대상) → 주민등록번호+# → 0번(신고서 제출) → 종료

주의 수입금액이 없어도 사업 관련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 사업자는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여야 함



국세청 126 상담센터
국세청 또는 상담원 국번 126
전국 02-1234-1234 상담원 126



참고 3

신고도움서비스 접근경로 및 자료 제공현황 등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01. 홈택스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메뉴의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를 순서대로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portal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links. The main menu on the left includes '민원증명',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재산세 관련 신청·신고', '부가가치세 관련 신청·신고',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highlighted with a red box),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소비세 관련 신청·신고', '즉시발급 증명_Asis',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_Asis', '기타 민원 증명_Asis', and '민원증명 조회/관리_Asis'. The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menu is expanded, showing '사업장현황 신고'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highlighted with a red box). Other options like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and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are also visible.

02.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신고도움서비스' (Report Help Service) page. The page title is '사업장현황신고서' (Business Status Report). Below the title, there are two steps: 'Step1. 일반신고' (General Report) and 'Step2. 제출내역' (Submission History). The '일반신고' step is selected. The page contains instructions for filing the report, including a note about the deadline and a link to the '신고도움서비스' (Report Help Service) (highlighted with a red box). At the bottom, there are buttons for '작성하기' (Write) and '파일변환 신고하기(회계 프로그램)' (Convert File and Report (Accounting Program)).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 [기장대리] > [사업장 현황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portal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and a navigation menu. The '세무대리·납세관리' (Tax Agent/Taxpayer Management) menu item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it, the '기장대리' (Agent) sub-menu is also highlighted with a red box. In the main content area, the '사업장현황 신고도움 서비스' (Business Status Declaration Assistance Service)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02. 의뢰인 사업자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Business Status Declaration Assistance Service' page. It includes a form for entering business information and a table showing the 3-year business status declaration. The '조회하기' (Search)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기본사항

과세년도	2025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이***
주업종코드	940306
업태/종목	서비스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안내유형	
신고안내자료에 대한 문의	세무서 소득세과 (☎) - 3385

3년간 신고상황

○ 수입금액 신고상황 ※ 전년도 신고내역은 홈택스 초기화한 우측상단 나의 홈택스-신고-목록조회 선택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입금액	0 원	0 원	0 원
수입금액 (종합소득세신고)	342,657,493 원	158,970,000 원	184,911,580 원

□ 신고도움자료 제공 현황

- ▶ 조회시점 및 사업장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조회될 수 있으니, '25년 전체자료 조회가 가능한 2월 초(2.3. 예정)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공자료		제공기준
매출 자료	신용카드 발급금액 ¹⁾	'25.1 ~ 11월까지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¹⁾	'25.1 ~ 11월까지 발급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 ¹⁾	'25.1 ~ 9월까지 매출
	제로페이 매출 자료 ¹⁾	'25.1 ~ 11월까지 매출
	전자계산서 발급금액 ¹⁾	'25.1 ~ 11월까지 발급
	주택매매업 부동산 양도 자료	'25.1 ~ 10월까지 등기
	수출통관 자료	'25.1 ~ 10월까지 통관
	캐디 등 용역제공내역 자료 ²⁾	'25.1 ~ 10월까지 용역제공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매출자료 ²⁾	'25.1 ~ 9월까지 매출
매입 자료	전자계산서 수취금액 ¹⁾	'25.1 ~ 11월까지 수취
	전자세금계산서 수취금액 ¹⁾	'25.1 ~ 11월까지 수취
주택 임대	본인 주택 수	'25.1 ~ 10월까지 보유내역
	사업자 등록 현황	'25. 12. 20. 기준
	지자체 등록 현황	'25. 12. 20. 기준
	부부합산 주택 수	'25.1 ~ 10월까지 보유내역

1) '25년 과세기간 전체 자료는 '26.1.26. 이후 조회 가능

2) 2월 3일부터 홈택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25년 모든 기간의 자료 조회 가능

□ 수입금액 검토표 간편 입력

- ▶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주택임대업자, 주택매매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등 기능을 활용하여 변경된 내용만 수정하여 「수입금액 검토표」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제 공 항 목
의 료 업 자	전년도 사업장시설	진료실 면적, 병상 수 등
학 원 사 업 자	전년도 사업장시설	강의실 수, 사무실, 책상 수 등
주 택 임 대	전년도 임대명세, '25년 주택보유자료	소재지, 종류, 면적, 임차인
주 택 매 매	부동산 양도자료	소재지, 면적, 양도가액

참고 4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홈택스)

①[기본정보 입력]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맞춤형 신고메뉴

사업장현황 신고서

과세기간
2025

사업자(주민)등록번호
000120-*****

상호(성명)
고***

사업자형태
단독사업자

기본정보 작성하기



②[실시간 소득자료] 제공

조회금액대로 신고 → 작성완료
다르게 신고하려면 → 닫기 후 수정입력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수입금액 불러오기

※ 조회할 전에 수입원 자료에서 11.12월분 포함 전제자료는 2.1 이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자		지급자(원천징수 의무자)		지급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연월	지급금액
☐	고***	000120*****	주식****	22081108**	202501	17,907,400
☐	고***	000120*****	주식****	22081108**	202501	10,756,200
☐	고***	000120*****	주식****	22081108**	202501	13,377,750
☐	고***	000120*****	주식****	22081108**	202501	35,011,200
☐	고***	000120*****	주식****	22081108**	202501	16,853,860

2.외국수취자료

□	소득자		외화수취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송금인명	지급연월	통화코드	지급금액	환화환산금액

합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합계	외국수취 원천징수 합계	수입금액 합계
0	0	0

닫기

작성완료

③[수입금액 내역] '미리채움'

업종코드, 수입금액, 지급명세서 매출 항목
→ 확인 금액으로 자동 채워짐(수정가능)

수입금액 매출명세서 입력하기

번호	업종	수입금액	수입금액 제외	수정	삭제	전도표
1	940306	37,000,000	0	수정	x	작성하기
합계		37,000,000	0			

수입금액 제출 구성 명세

계산서 원금분	해당지 원금분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매출	지급명세서 제출분	외국수취(환화환산)	합계
0	0	0	0	0	37,000,000	0	37,000,000

- * (수입금액 제출명세서 내역의 수입금액 한계액 (수입금액 제출 구성 명세서의 합계)는 동일해야 합니다.
- * 계산서(환영금액)수입금액 제외 항목이 있는 경우 (배출처별 계산서(합계)를 전체 출력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 계산서(환영금액)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매출이 중복된 경우에는 계산서(환영금액)에만 작성합니다.
- * 지급명세서 제출된 수입금액 및 외국수취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1인미디어창작자 자료조회)를 먼저 클릭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작성완료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손택스) |

①[기본정보 입력]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맞춤형 신고메뉴

<
사업장현황신고서

1 기본정보 입력
1/6

기본인적사항

주인(사업자) 등록번호 선택

주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000120
-
.....
확인
사업자번호 없이 신청 가능한 업종코드 안내



②[실시간 소득자료] 제공

조회금액대로 신고 → 입력완료
다르게 신고하려면 → 닫기 후 수정입력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 수입금액 불러오기

22081108**

202501
4,945,640

외화수취자료
(단위 : 원)

소득자 성명

소득자 주민등록번호

송금인명
거래연월

통화코드
거래금액

원화환산금액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합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합계
127,653,450 원

외화수취 환산금액 합계
0 원

수입금액 합계
127,653,450 원

안내

위 금액으로 신고하시려면 [입력완료], 다르게 신고하시려면 [닫기]를 누른 후 수입금액 내역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세요.

닫기
입력완료



③[수입금액 내역] '미리채움'

수입금액, 지급명세서 매출 항목
→ 확인 금액으로 자동 채워짐(수정가능)

<
사업장현황신고서

2 수입금액내역 (수입금액점토표)
2/6

합계

수입금액
127,653,450 원

수입금액 제외
0 원

수입금액 합계
127,653,450 원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자료조회

신용카드 매출 자료조회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조회

합계
127,653,450 원

계산서 발급분
0 원

매입자 발행분
0 원

신용카드 매출
0 원

현금영수증 매출
0 원

기타매출
0 원

지급명세서 제출분
127,653,450 원

외화수취 (원화환산)
0 원

이전
저장 후 다음

알림
마이홈
최근 My 메뉴
국세우편물
가장 골라보기

참고 5

주택임대사업자 과세기준 및 신고 유의사항

-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적용이자율 3.1%)
- 과세대상: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고가주택¹⁾ 또는 국외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²⁾

1)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2)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 과세요건(부부합산 보유주택 수 기준)

부부합산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
1주택 보유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고가주택')의 월세 수입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 다음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사례)

주 택 소유자	주택 보유 현황				간 주 임대료 대 상	세 부 내 용
	소형주택		비소형주택			
	주택수	보증금 합계	주택수	보증금 합계		
A	2채	4억 원	3채	5억 원	○	비소형주택 보증금 5억 원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계산
B	-	-	2채	5억 원	×	비소형주택 3채 미만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C	-	-	4채	3억 원	×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나 보증금합계 3억 원 이하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주임대료) '25년 귀속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에금 연 이자율이 3.1%로 하향('24년 귀속 3.5%)되었습니다.
-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주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소유주택이라도 주택 수에 가산됩니다. (소득령 제8조의2 제3항 제2호)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 주택의 총임대수입금액 × 지분율

②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단, 부부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등록임대주택) 「주택임대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¹⁾」에 해당하는 기간 입력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²⁾와 공제금액³⁾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①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2) (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3)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 원, 미등록임대 2백만 원

|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 세부담 비교 (분리과세) |

구 분	① 등록임대주택 (위 1) 요건을 모두 충족)	② 미등록임대주택 (① 이외의 경우)
총수입금액 (-)	2,000만 원	2,000만 원
필요경비 (-)	1,200만 원 (60%)	1,000만 원 (50%)
공제금액 (-)	400만 원	200만 원
과세표준 (=)	400만 원	800만 원
세율 (x)	14%	14%
산출세액 (=)	56만원	112만원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25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2)